

의안번호	2212125
의 퇴 인	송석준의원
회 답 일	2025. 9. 15.
추계번호	25C4418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제2항 (비용의 보조) 신설	국가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,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6조제2항 (비용의 보조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(지자체 지원의 경우 재원부담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 소요에 있어 변동이 없어,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)

2. 상세 사유

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(안 제26조제2항 신설)

- 개정안은 법 제11조의21)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,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

1) **법 제11조의2(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)**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(이하 "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"이라 한다)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·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,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4.22.] (시행예정일: 2026.4.23.)

- 다만,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의 시행 시점이 2026년 4월 23일로, 현시점에서는 등록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여성가족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돌봄 지원은 돌봄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가 아이돌봄서비스로, 통상적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내 돌봄서비스는 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

□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